

정하고 있으나 허가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할 경우까지 반환한다면 육교사용을 필요로 하면서도 허가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다른 시민의 불이익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의 철회 또는 허가면적이나 허가기간의 변경허가에 의한 것이므로 수허가자의 철회 또는 허가내용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제5항 :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 조항 신설

사용료 부과·징수개념이 도로점용료와 같으므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는 조례의 준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기타

(1)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음.

□허가의 취소이므로 기납부한 사용료를 몰수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별도의 벌칙조항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벌칙근거도 없이 납부한 사용료를 몰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임.

종합의견

1.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 개정 필요
조례 제4조제4항의 경우는 육교 사용허가 후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육교사용을 권유하였으나, 수허가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조례 제9조에 의거 반환토록 하였으나,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경우는 기납부한 사용료 반환조항이 없으므로 제7조 후단 또는 제9조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의 보완
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4항은 사용허가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수허가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철회하거나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와 제7조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를 포함하여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 8 조를 삭제한다.

제 9 조제1항중 "사용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제1회에 한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사용기간은 행사개시일 30일전부터 행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의 범위안에서 육교사용을" "육교사용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점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점용료에 해당하는 사용료"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철회하거나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와 제7조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를 포함하여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⑤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육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육교사용 허가신청이 접수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검토보고 요지

1. 조례개정안 제출근거 검토

공공하수도 관리범위의 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 하수관거의 점검, 각 구청장이 신청하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규정 등 공공기관의 관리범위 조정과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위법 부당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음.

2. 개정안 검토

□조례안 제2조의2 개정 :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범위 조정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차집관거는 시장이 관리하고 하수관거는 자치구청장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범위를 조정한 것임.

□조례안 제2조의5 신설 :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준설 등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위해 년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하수관거를 2년마다 1회 이상 준설토록 관리기준을 설정한 것임.

□조례안 제2조의6 신설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구청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또는 폐지인가를 받을 경우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하수도를 시장이 총괄토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임.

□조례안 제15조제4항 신설 : 사용료 부과율 적용

가정용과 다른 업종으로 겸용 사용하는 계량기인 경우 기본수량은 가정용으로 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토록 구분한 것임.

□조례안 제18조제4항 개정 : 사용료의 징수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평균 사용량을 적용토록 하고, 평균 사용량이 1㎡ 미만인 경우 절상하던 것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특 하여 사용자인 시민중심의 사용료 징수 방법으로 개정된 것임.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방법 및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개정안은 본래의 조례 제13조를 삭제하였으므로 제18조제3항중 “제13조”를 “제12조제1항제1호”로, “허가신청”을 “신고수리”로,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신고기간”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조례안 제20조 개정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임.

-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 이상 배수설비 설치로 인한 공공하수도 개축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당해비용의 1/2 이상이라 하였던 것을 산정비용의 2/3로 확장한 것은 비용부담 결정시 공무원의 재량권을 배제하였고

- 타공사·타행위에 대한 개념 구분과 건축연면적 1,600제곱미터 이상 신·증축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조례안 제28조 개정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내용 일부 조정

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가산금의 징수, 부과액 조정신청 접수 및 결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오수배출량의 인정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1994년 11월을 기점으로 하여 해당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사용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도 하수처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 것임.

□기타

제2조(용어의 정의) 내지 제29조의5(체납독촉 등)까지는 관련법·령, 조례의 개정과 다른 용어의 개정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보완한 것으로서 필요사항이라 사료됨.

종합의견

1. 조례개정안은 본래의 조례 제13조를 삭제하였으므로 조례개정안에서 누락된 제18조제3

- 항중 “제13조”를 “제12조제1항제1호”로 하고 “허가신청”을 “신고수리”로,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신고기간”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 2. 조례안 제18조제4항의 경우는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급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하수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
- 3. 기타 개정내용은 법·령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제13조”를 “제12조제1항제1호”로 하고, “허가신청서”를 “신고수리서”로 하며,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신고기간”으로 한다.

안 제18조제4항중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도물을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을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2가구 이상이 공동 급수하는 사용자는 급수량의”로 한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물받이 등의 설비를”을 “및 기타의 배수시설을”로 하고, 동조제3호중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를 “배수설비 설치자”로,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을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10. “관리청”이라 함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공공하수도 관리의 범위) 법 제7조 및 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의 공공하수도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시장 :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 관리
- 2. 구청장 :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 빗물 펌프장,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도실 및 기타 공작물과 하수도 부대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

제2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제5조중 “유지관리비”를 “하상유지관리비”로 하며, 동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 2.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하수관거 준설 등) 관리청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의6(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①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2. 사업시행목적
- 3. 설치시설의 종류·규격 및 재질
- 4. 예정배수구역
- 5. 사업시행구간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내역서(수용시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와 그 위치를 표시한 하수관망도
-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3. 하수관 개량 필요성에 대한 관련서류

제2조의7(인가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제2조의6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